

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에 관한 고시

포항시 고시 제 2017-36호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
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.

- ☐ 허가번호 : 17-06
- ☐ 점용위치 :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해안 일원
- ☐ 점용목적 : 국방·군사 해안경계용 CCTV 운영
- ☐ 허가기간 : 2017. 4. 1 ~ 2020. 5.31
- ☐ 허가면적 : 70㎡
- ☐ 허가 연월일 : 2017. 3. 28
- ☐ 피허가자 주소 :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사서함 209-101-13호
- ☐ 피허가자 성명 : 해병대제1사단장

2017. 3. 28

포 항 시 장

